

의안번호	제26호
의결 연월일	2002년 10월 일 (제205회)

##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02년 월 일

#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의안  
번호

26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21세기 첨단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창업보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유가 발생하여
- 현재 옥천군으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옥천군소재 도유재산을 교환하여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신축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### 재산의 취득·처분

#### ◀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부지교환 ▶

#### ○ 대상재산

- 도유재산 : 옥천읍 대천리 647-5외 30필지 11,345㎡정도
- 군유재산 : 옥천읍 금구리 85-20 학교용지 3,437㎡

#### ○ 재산가액

- 도유재산 : 846백만원
- 군유재산 : 845백만원

※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이며 교환시 등기교환

재산의 취득

<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 >

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85-20
- 규 모 : 부지 3,437㎡, 연건평 2,380㎡(720평 지상2층)
- 사업기간 : 2002 ~ 2003. 12
- 사 업 비 : 1,886백만원(교부세 800, 도비686, 국비400)
- ※ 사업비는 건축비만 계상(부지는 옥천군소재 도유재산과 교환)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 고
계	1,886,000 (도비:1,886,000)		845,502	846,625	
창업보육센터 건립	1,886,000 (도비:1,886,000)		845,502	846,625	

4.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78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

##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회계명 : 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 유 자 주 소 성 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1 건	2,390㎡ (720평)	1,886,000 (686,000)				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 (1건)	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85-20 (충북과학대 내)	2,390㎡ (720평)	1,886,000 (686,000)	2002 - 2003.12	충북과학대 청암보육센터 건립	신 축	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타							

1. 추정가액내 ( )는 오버 예산액



# 관계법령발췌

## 【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】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<b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</b>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</b>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
<p><b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</b>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</p> <p>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전분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</li> <li>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</li> </ol>



## 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</li> <li>2 ~ 5호 생략</li> </ol>